

#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정	1997.	3.
개 정	1999.	3.
개 정	2000.	3.
개 정	2001.	3.
개 정	2002.	3.
개 정	2003.	3.
개 정	2005.	3.
개 정	2005.	6.
개 정	2006.	3.
개 정	2007.	3.
개 정	2008.	3.
개 정	2009.	3.
개 정	2011.	3.
개 정	2012.	3.
개 정	2013.	3.
개 정	2013.	7.
개 정	2015.	2.
개 정	2016.	2.
개 정	2017.	8.
개 정	2021.	4.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경영대학원, Culture-Technology융합대학원, (이하“특수대학원”이라 한다.)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개정 2016.02.18.)

## 제 2장 입학전형

제2조 (입학전형 계획) 대학원장은 매 전형시마다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이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모집요강)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의 각호 등을 포함한 학생 모집요강에 명기하여야 한다.

1. 모집과정 및 인원
2. 모집학과 및 전공

3. 지원자격
4. 전형방법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및 전형료
7. 기타

제4조 (모집구분) 모집인원은 주간과 야간수업과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특별전형) ①대학원 학칙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자,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와 대학 성적이 우수한 자는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산업체 범위 및 근무기간과 대학의 성적기준은 학생 모집요강에서 이를 정한다.

③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모집요강에서 이를 정한다.

제6조 (일반전형) ①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답고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고사별 배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모집요강에서 이를 정한다.

제7조 (정원의 전형) ①대학원 학칙 제 9조 제 4항에 의한 재외국 국민, 모국 유학생, 외국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전형한다.

②정원의 전형의 세부적인 전형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 (전형위원) ①전형위원은 전공별로 3인씩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대학원 교학실장은 입학전형을 총괄하며, 전형위원은 필답고사의 출제 및 채점과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등을 담당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전형계획에서 이를 정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전형과정 및 성적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사정을 거친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 3 장 교육과정

제10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학과 및 전공단위로 편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교육과정은 각 대학원별 공통교과, 학과필수교과, 학과선택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개정 2017.08.28.)

③대학원 공통교과는 각 대학원별로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원의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학과필수교과는 학과 단위 내에서 필히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학과선택교과는 학과 단위 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공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편성한다. (개정 2017.08.28.)

제11조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3개월 이전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교과목 개설 등) ①학과 주임교수는 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하도록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교수는 1인당 매학기 2개 교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03. 01)

제13조 (이수과목 및 학점) ①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공통교과 9학점과 학과 필수교과 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2.16.), (개정 2016.02.18.)(개정 2017.08.28.)

②대학원 학칙 제 16조 제 2항에 의한 선이수 과목은 입학 학기초에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지정하고 이수여부만을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하며 이수 미필일 때에는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전공교과목을 수강하여 낙제(C미만)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강하거나 다른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④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재수강 할 수 있다.

⑤위의 제 3항 및 4항에 의거 재수강할 때에도 수강신청 및 등록을 거쳐야 하며, 재이수하여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 실제 수강한 학기에 성적처리하고 이전의 성적은 재이수(R)로 수정하여 평점평균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⑥수강교과목중 해당학기에 성적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동안 학점 부여유보(I-Incomplete로 표기)로 처리하고 성적이 처리된 학기에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 (타 대학원 등의 학점 취득) ①대학원 학칙 제 18조에 의해 타 대학원 등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 등에 한하여 사전[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타 대학원등에서의 이수는 전공교과 또는 특수분야의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기당 6학점, 과정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위의 제 1항 및 2항에 따라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성적표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기 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④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 대학원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수한 대학원 및 교과목명 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성적을 이수(P)로 표기할 수 있다.

제14조2 (학위과정 연계)학칙 13조3에 의거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둔다.

①학.석사연계과정 생이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학.석사연계과정 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과정 등의 학점 인정) 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또는 본 대학 부속기관의 교육과정을 수강 또는 이수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B이상인 경우 학과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교과목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복학생의 교육과정 적용) ①복학생이 휴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며 복학학기 이후에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복학생이 과락으로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다.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재입학

제18조 (등록) ①수업연한에 관계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에 따른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

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은 6학점 기준이며 추가 수강신청시 추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논문과정 9학점 수강신청은 예외로 한다.

②수료학점을 이미 취득한 자도 논문 제출학기에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휴학) ①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달리 허가할 수 있다.

②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관계 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 연기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복학) ①대학원 학칙 제 24조 제 4항에 의한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초 등록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②복학하는 자의 납입금 산정은 학교수업료 등의 징수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21조 (재입학 및 전과) ①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가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전의 수업연한과 취득학점은 학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④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 2주 이전까지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는 전과를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15.02.16)

⑤기타 전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2.16)

## 제 5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2조 (공개강좌) ①공개강좌는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공개 강좌는 학기단위로 개설하며 학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연구과정의 설치 및 모집) ①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②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 등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③연구과정의 전형방법 등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학생모집요강에 이를 정한다.

④석사학위과정 지원자 중 선발자격은 갖추었으나 불합격한 경우 그 성적으로 연구과정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과정 이수) ①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2학기)으로 한다.

②연구생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4개 과목 이내로 한다.

③연구생이 동일한 전공교과를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모든 과목의 성적이 C이상이면서 전과목 평점 평균이 B이상이면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강료에 준한다.

⑤연구과정의 교육과정운영 등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세칙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③항은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07. 18)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16)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

부 칙(2016. 02. 18)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시행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